

제품안전 질의응답

# Q & 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매입형 할로겐 안정기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할로겐 램프용 컨버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직류전원장치 또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에 해당되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정기류는 통상 방전등(램프)의 점등 및 전원공급에 사용되는 교류용 제품이나, 방전등이 아닌 할로겐 전구는 전구 점등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또는 조명기구용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전동스크류 드라이버 안전인증대상이 궁금합니다.**

**A**

입력전원이 AC 110V 또는 220V인 푸시스타트 방식의 전동스크류 드라이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전기드라이버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으나, 입력전원이 DC 30V인 레버 스타트 방식 및 자동기용 전동스크류 드라이버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3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메인보드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Digital Video Recorder'의 메인보드가 변경 될 경우, 동 메인보드의 변경사항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일 경우, 파생모델 등록만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하나, 동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기본모델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Q4 운동용 안전모의 안전인증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운동용 안전모'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3'에 의거 '놀이 또는 스포츠, 래저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를 말하며, 자전거·롤러스포츠·킥보드·스케이트 보드 등과 같이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스포츠·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와 등산용, 스키용(스노보드 포함), 야구용 등에 적용합니다.

## **Q5 아이스 스케이트용과 수상스포츠용(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헬멧이 안전인증 대상 '운동용 안전모'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이스 스케이트 전용 또는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등 수상 스포츠 활동 시에만 사용하기 위해 만 들어진 헬멧인 경우에는 현행 「품공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제품이 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과 같이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또는 스포츠·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